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6. 1.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상 농가의 범위를 확대해서 경제 기반이 열악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피해 농가의 상실감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인 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제6조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대상 완화
 - 총 피해 면적 330㎡ 미만을 165㎡ 미만으로, 피해보상액 20만원 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함
 - 총 피해 보상 산정액을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함
-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 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함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함

3. 참고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중 “330㎡” 를 “165㎡” 로, “20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호중 “20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중 “농정과장이” 를 “농정과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제1호로
동조동항제3호를 제2호로 한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 및 제2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8호를 말한다.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시장은 구미시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농가의 피해 농지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피해보상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 한다.

제6조(보상 제외대상) 피해 농가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다만,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7조(신고 조사) 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상황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농가 입회하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피해 내역을 조사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보상금 산정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해 보상금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농가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농정과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피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 조치)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피해 보상은 피해 발생일 현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중 농작물복구분야의 대파대와 농약대의 단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 작 물 피 해 신 고 서(제7조제1항 관련)		
피해농업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피해농경지	지 번	
	경작면적(m ²)	
	피해면적(m ²)	
	피해농작물	1. 2. 3.
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근거자료 :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피해 지원금 결정통지서 (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지원대상자 (주소, 성명)				
보 상 금		금 원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작물피해 지원금 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				
⑦ 피해 금액		원		
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보상 제외대상)피해 농가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상 제외대상)----- ----- -----
1. 총 피해면적이 <u>330m²</u> 미만인 경우, 다만, 피해보상액이 <u>20만원</u>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u>165m²</u> ----- ----- <u>10만원</u> ----- -----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u>20만원</u> 미만인 경우	2. ----- <u>10만원</u> ----- ---
3. (생략)	3. (원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u>농정과장</u>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②(원안과 같음) ③----- ---- <u>농정과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u> -- ----- -----
1. <u>구미시의회 의원</u>	(삭 제)
2. <u>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1. (원안 제2호와 같음)
3.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2. (원안 제3호와 같음)